

| | |
|------|-----------|
| 의안번호 | 제2866호 |
| 의결 | 2024. . . |
| 연월일 | (제 회) |

| | |
|------|--|
| 의결사항 | |
|------|--|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 |
|-------|---------------|
| 제 출 자 | 고성군수 |
| 제출연월일 | 2024. 11. 14. |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2866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공공기관과 국민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당초예산 편성예정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없음[복지지원과-22169(2024. 4. 24.)]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 564호

가) 예고기간: 2024. 3. 25. ~ 2024. 4. 15.(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고성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 나. 고성군의회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 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포상(안 제9조)

가. 소요예산: 5,000천 원(연간)

- (교육 및 홍보) 홍보전단지 1,000천 원*1회=1,000천 원
홍보 물품구입 1,000천 원*1회= 1,000천 원
- (포상) 환경우수업소 지정 1,000천 원*3개소=3,0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환경과장 최 정 란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